

제주삼도이동 행복주택(H-1BL, H-2BL) 입주자 모집

■ 건설위치

- (H-1BL)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2-3번지 일원
- (H-2BL)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9-4번지

■ 공급대상 및 주택관리번호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 제주삼도이동 H-1BL 행복주택 54호	2022000412
· 제주삼도이동 H-2BL 행복주택 34호	2022000413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6.30(목)

||| 목 차 |||

임대주택 신청 유의사항 및 주요 신청자격	1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2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4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10
4. 신청서류(모든 서류는 2022.06.30 이후 발급)	13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17
6.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18
7. 유의사항	22
8.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26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26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26

제주삼도이동 행복주택(H-1BL, H-2BL)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6.30(목)

■ 건설위치 및 공급대상

- (H-1BL)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2-3번지 일원 행복주택 54호
- (H-2BL)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9-4번지 행복주택 34호

-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금회 모집공고는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접수** 합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해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시 필히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 **신청은 제주삼도이동 H-1BL과 제주삼도이동 H-2BL의 주택형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 * 본 모집공고는 선착순모집이 아니므로 모집기간 내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신청시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제주삼도이동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은 공고문 본문(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7.01~2003.06.3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 예술인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만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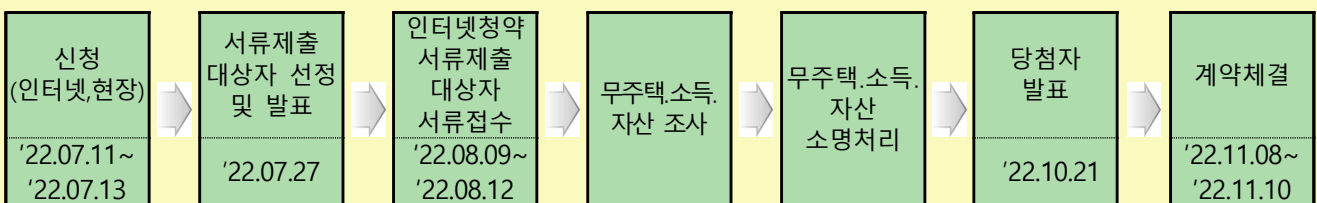
③ 고령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1957.06.30 이전 출생자)

④ 주거급여수급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1.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주택형	공급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최대거주 기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H-1 BL	26A	청년	8	8	26.94	13.25	6.02	10.95	57.16	6년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23.09 (예정)
		주거급여수급자	3	3						20년		
		고령자	1	2						20년		
	26B	고령자	2	1	26.94	13.25	6.02	10.95	57.16	20년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13	13	36.95	18.18	8.26	15.02	78.41	무자녀 : 6년 유자녀 : 10년		
H-2 BL	26A	청년	13	13	26.15	18.03	12.27	-	56.45	6년	철근콘크리트 벽식 / 개별난방	'23.09 (예정)
		주거급여수급자	2	2						20년		
		고령자	1	1						20년		
	26B	고령자	1	1	26.15	18.03	12.27	-	56.45	20년		

■ 임대조건

(단위 : 원)

주택형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최대화		임대보증금 최소화		임대보증금전환 한도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최대)	월임대료 (최소)	임대보증금 (최소)	월임대료 (최대)	중액 한도	감액 한도		
		계	계약금	잔금									
H-1 BL	26A	청년	소득 없음	30,600,000	1,530,000	29,070,000	140,250	43,600,000	75,250	5,600,000	192,330	13,000,000	25,000,000
			소득 있음	32,400,000	1,620,000	30,780,000	148,500	47,400,000	73,500	5,400,000	204,750	15,000,000	27,000,000
	26A	주거급여 수급자	27,000,000	1,350,000	25,650,000	123,750	37,000,000	73,750	5,000,000	169,580	10,000,000	22,000,000	
	26A	고령자	34,200,000	1,710,000	32,490,000	156,750	51,200,000	71,750	6,200,000	215,080	17,000,000	28,000,000	
	26B	고령자	34,200,000	1,710,000	32,490,000	156,750	51,200,000	71,750	6,200,000	215,080	17,000,000	28,000,000	
36A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0,800,000	2,540,000	48,260,000	232,830	77,800,000	97,830	7,800,000	322,410	27,000,000	43,000,000		
H-2 BL	26A	청년	소득 없음	30,600,000	1,530,000	29,070,000	140,250	43,600,000	75,250	5,600,000	192,330	13,000,000	25,000,000
			소득 있음	32,400,000	1,620,000	30,780,000	148,500	47,400,000	73,500	5,400,000	204,750	15,000,000	27,000,000
	26A	주거급여 수급자	27,000,000	1,350,000	25,650,000	123,750	37,000,000	73,750	5,000,000	169,580	10,000,000	22,000,000	
	26A	고령자	34,200,000	1,710,000	32,490,000	156,750	51,200,000	71,750	6,200,000	215,080	17,000,000	28,000,000	
	26B	고령자	34,200,000	1,710,000	32,490,000	156,750	51,200,000	71,750	6,200,000	215,080	17,000,000	28,000,000	

※ 임대공급 관련 유의사항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실제 생활하는 실내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타공용면적 등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편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26B형(고령자)에 공급되며(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 3층(H-1BL 3층이하, H-2BL 2층이하) 이하에 공급됩니다.
- **26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마루귀틀 경사로(현관), 비상연락장치(욕실), 동체감지기(거실 겸 침실), 자석감지기(현관), 욕실 출입구 센서등(욕실입구), 출입문 확대(욕실), 좌식 샤워시설(욕실), 안전손잡이(욕실, 현관), 높낮이 조절 세면기(욕실) 등이 일괄 설치되며, **입주자 요청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H-1BL 내 36A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H-2BL의 청년 등의 경우 H-1BL의 36A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
- 신청자는 H-1BL 또는 H-2BL 주택형 중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H-1BL과 H-2BL 주택형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예 H-1BL 26A 청년 및 H-2BL 26A 청년 중복신청 불가)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입주예정일(23.09)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별도안내 예정입니다.

※ 임대조건 관련 유의사항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청년은 소득 유무에 따라 다른 임대조건이 적용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입주시점에 기본 임대보증금의 50%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이자로 지원해드립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6.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참고)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7.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2-1. 청년

■ (청년)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㉗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㉗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㉗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7.01~2003.06.30)

①-㉗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 ③ 해당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기준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3,854,536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 ①-④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 ①-④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 ①-④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 '청년'의 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순위	대상
1순위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청년)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거주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청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배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2-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을, 한부모가족은 ①-㉒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㉒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 ② 혼인기간이 만7년 이내일 것 또는 만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

가구원수	외벌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인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인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인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인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 한부모가족은 본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순위

순위	대상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신청자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임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거주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 19세 미만	2자녀 이상	1자녀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배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추천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동일 배점 및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천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2-3. 고령자

★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 신청자격이 동일하므로,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1957.06.30 이전 출생자)

-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일 것
- ②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1인	3,854,536원 이하	120%
2인	5,328,807원 이하	110%
3인	6,418,566원 이하	100%
4인	7,200,809원 이하	100%
5인	7,326,072원 이하	100%
6인	7,779,825원 이하	100%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고령자)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배점항목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

항목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7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만 70세 미만 ~만 65세 이상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제주특별자치도에 5년 이상 거주	-	제주특별자치도에 5년 미만 거주
③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중 생존자 및 유족 : 3점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고령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배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동일 배점 및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2-4. 주거급여수급자

★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 신청자격이 동일하므로,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주거급여수급자)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배점항목에 해당하는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제주특별자치도에 5년 이상 거주	제주특별자치도에 5년 미만 거주
②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제주 4·3 사건 희생자 중 생존자 및 유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주거급여수급자)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기준
우선공급	배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추첨

-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동일 배점 및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 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우선 공급	- 청년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인터넷(PC·모바일) 접수 '22.07.11(월) 09:00 ~'22.07.13(수) 17:00 * 인터넷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2.07.27(수) 17:00 이후	'22.08.09(화)~ '22.08.12(금) 10:00~16:00	'22.10.21(금) 17:00 이후	전자/현장계약 '22.11.08(화)~ '22.11.10(목) 10:00~16:00
일반 공급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 '22.07.11(월)~'22.07.13(수) 10:00~17:00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현장접수 장소 LH제주지역본부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 ☎1661-7700	* 현장계약 장소 LH제주지역본부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1957.06.30 이전 출생)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LH 제주지역본부 방문시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시 신청서류(모집공고문 p.13~16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은 ①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②방문접수, ③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는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인터넷 대행 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현장접수 장소 : LH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우편접수 주소 : (우)631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LH 제주지역본부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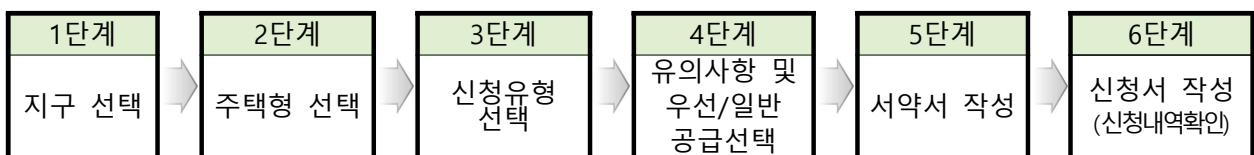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 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LH제주지역본부(제주시 전농로 100) 방문

-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는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4.신청서류(모집공고문 p.13~16 참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청약 절차



•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07.11(월) 오전 9시부터 마감일 '22.07.13(수) 오후 5시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방법

-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 신청자는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자 중 서류제출대상자는 '22.07.27(수) 17:00이후에 발표됩니다.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①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②방문접수, ③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①-1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2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PC는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 모바일은 7종(PDF, JPG, JPEG, GIF, TIF, TIFF, PNG)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③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방문 및 등기우편 주소
 - (우)631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LH 제주지역본부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4.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6.30) 이후 발급

- 인터넷 청약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접수 기간('22.08.09~'22.08.12)에 제출
 -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 신청자 : 신청접수 시('22.07.11~'22.07.13)에 제출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① 현장(인터넷 대행) 접수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②-1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첨부된 동의서양식 서명란에 작성 대상자 전원이 성명을 정자로 기재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참고) 공급대상별 ②-1 공통 제출서류 요약

구 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비 고
청년 계층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세대원 또는 단독세대주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혼 부부 · 한부 모 가족 계층	신혼부부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예비 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 + 예비배우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 + 예비배우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신청자 + 예비배우자)	
	한부모 가족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부 또는 모와 만 6세 이하 자녀
고령자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신청자 + 해당세대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 + 해당세대	작성 불필요	작성 불필요	

■ ②-2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예비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청년",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임신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③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청년	<p>[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p>[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p>[예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p>[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p>[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p>[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학교 가입 은행
고령자	<p>[우선공급 배점③을 받고자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 대표신청자가 아닌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등본 추가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함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됨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 가입 은행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주거급여 수급권자에는 해당하나 수급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분은 각서(공사양식) 제출 [우선공급 배점②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 안내

○ 전자계약 ['22.11.08(화)~11.10(목), 10:00~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 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22.11.08(화)~11.10(목), 10:00~16:00]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LH 제주지역본부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 도장(본인이 방문 시 서명가능) • 계약자(당첨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방식 : 대리인 신분증, 본인(당첨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 본인서명방식 : 대리인 신분증, 본인(당첨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p>* 수임인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p>

6.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금융자산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자동차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7.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320 488 1477 633">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청년 계층</td> <td>6년</td> </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td> </tr> <tr> <td>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td> <td>20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H-1BL 내 36A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H-2BL의 청년 등의 경우 H-1BL 36A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예비입주자	<p>■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됩니다. 공급대상자별 예비입주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갱신계약 등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96 913 1469 1084">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최초 갱신계약 시</th> <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20%</td> <td>130%</td> </tr> <tr> <td>30%초과</td> <td>130%</td> <td>1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의 경우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에는 상가가 없으며, H-1BL의 경우 주차대수 41대(지상 21대, 지하 20대), H-2BL의 경우 주차대수 21대(지상 21대)입니다. • H-1BL 지하주차장 차로높이는 2.4M, 입구 폭은 4.25m입니다. • 천장 및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포함된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상에 적용된 마감재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 시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경계에 근접하게 주변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 해당 단지는 대로변에서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이사가 불가능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창호는 합성수지창호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창호 및 주변 외벽 등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입주자의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생활(용)자원보관소 등은 1층에 위치하며, 소음 및 냄새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승강기는 기계실 있는 타입으로 설치되며, 승강기 관련 장비(제어반, 모터 등)로 인해 승강기 인접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세탁기용 콘센트의 위치에 따라 별도의 연결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연결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신발장 맞은편 통합단자함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세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원활한 이동통신 사용을 위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지하실 헨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및 펌프실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발코니 실외기실 창호는 실외기 배치를 고려하여 시스템루버창(금속창호)으로 시공됩니다. • LPG가스저장탱크는 H-1BL의 경우 단지 북동측에, H-2BL의 경우 단지 동측에 위치합니다. • 관련 규정 및 공용 전기요금 절감을 위하여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계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가능 •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잔금납부 시 기본 임대차보증금의 50% 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이자로 지원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계약안내문 참고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구분	등급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흥남종합건설(주) 태웅종합건설(주) 대창기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마루귀를 경사로(현관), 비상연락장치(욕실), 동체감지기(거실 겸 침실), 자석감지기(현관), 욕실 출입구 센서등(욕실입구), 출입문 확대(욕실), 좌식샤워시설(욕실), 안전손잡이(욕실, 현관), 높낮이조절 세면기(욕실) 등이 일괄 설치되어있으며 아래 표 설치시설 항목은 각 항목별 신청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항목

구분	시설내용[단위세대]	신청대상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부엌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수건걸이 1.0~1.2m 높이에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기타	관리소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비디오폰 설치 높이 조정의 경우 노출설치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제공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항목

구분	설치항목		신청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 뇌병변 (상이등급 3급이상)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 (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장애인 (")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비디오폰 설치 높이 조정의 경우 노출설치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 주택 공정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삼도이동 현장사업소 ☎064-805-3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나,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 불가할 수 있으며, 신청 전 현장사업소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팸플렛 배부처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당첨자 ARS	☎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현장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6.30

